

의안번호	2211786
의 퇴 인	정진욱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1.
추 계 번호	25F40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양도차익
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양도차익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현행 대비 2년 연장하여 적용할 경우 향후 법인세수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, 연도별로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감소하다가 2034년부터 2037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
-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고려하면, 2026년 귀속분의 세수효과는 2031~2037년간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31~2037년

(단위: 백만원)

	2031	2032	2033	2034	2035
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양도차익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 연장 (안 제121조의26)	-2.4	-2.4	-1.0	1.5	1.5
	2036	2037	누적		연평균
	1.5	1.5	0		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1조의26 (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)	○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양도차익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 연장 - 특례대상: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으로 충당한 내국법인 - 특례내용: (현행) 양도차익에 대한 4년 거치, 3년 분할 익금산입 → (개정안) 양도차익에 대한 6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- 적용기한: 2026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1조의26 (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2031~2037년간 발생

○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현행 및 개정안의 양도차익 거치기간과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고려하면, 세수효과는 2031~2037년간 발생

－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말임을 감안하면, 개정안은 2026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

[표 2] 현행 및 개정안의 연도별 거치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: 2026년 귀속분 기준

신고 연도	2027~2030년	2031년	2032년	2033년	2034년	2035년	2036년	2037년
현행	거치	분할 익금산입	분할 익금산입	분할 익금산입	-	-	-	-
개정안	거치	거치	거치	분할 익금산입	분할 익금산입	분할 익금산입	분할 익금산입	분할 익금산입

□ 2026년 신규 양도차익 발생액은 2018~2024년간 조세지출 실적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
○ 동 제도의 2026년 신규 양도차익 발생액은 2018~2024년 연평균 실적(730만원)으로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을 위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
 - 동 제도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
 - 현행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법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4년 거치,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
 - 개정안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연도별로 세수효과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특례대상: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으로 충당한 내국법인
 - 특례내용: (현행) 양도차익에 대한 4년 거치*, 3년 분할 익금산입 → (개정안) 양도차익에 대한 6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
 - ※ 양도가 발생한 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를 포함
 - 적용기한: 2026.12.31.

- (감면실적) 동 제도에 따라 최초 조세지출 실적이 발생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적은 연평균 730만원 수준으로 발생

[표 3]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: 2018~2024년
(단위: 백만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(‘18~’24년)
실적	10	10	10	10	7	4	0	7.3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2026년 신규 양도차익이 2018~2024년간 조세지출 실적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, 현행 및 개정안의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- 2026년 신규 양도차익은 2018~2024년간 조세지출 실적의 연평균인 730만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- 2026년 신규 양도차익의 현행 및 개정안의 거치기간과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고려하면, 향후 연도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
 - 분할 익금산입 기간에는 자산 양도차익을 균분하여 산입함에 따라, 2026년 양도차익 추정치 730만원에 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는 2031~2033년간 연도별로 243만원, 개정안 하에서는 2033~2037년간 연도별로 146만원을 분할 익금산입
 - ※ (현행) 243만원 = 730만원 × 1/3, (개정안) 146만원 = 730만원 × 1/5

[표 4] 현행 및 개정안의 연도별 세수효과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신고기준	2027~2030년	2031년	2032년	2033년	2034년	2035년	2036년	2037년
현행(A)	거치	2.4	2.4	2.4	-	-	-	-
개정안(B)	거치	거치	거치	1.5	1.5	1.5	1.5	1.5
세수효과(B-A)	-	-2.4	-2.4	-1.0	1.5	1.5	1.5	1.5

(3) 추계결과

-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양도차익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현행 대비 2년 연장하여 적용할 경우 향후 법인세수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, 연도별로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감소하다가 2034년부터 2037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
 -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고려하면, 2026년 귀속분의 세수효과는 2031~2037년간 발생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31~2037년

(단위: 백만원)

	2031	2032	2033	2034	2035
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양도차익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 연장 (안 제121조의26)	-2.4	-2.4	-1.0	1.5	1.5
	2036	2037	누적		연평균
	1.5	1.5	0		0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